

■ 최신 법령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배성진 변호사 | 허종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3년 10월 21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부계·모계 혈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의 설립·취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1)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개정안 제6조)

개정안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권고된 법령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부계·모계 혈족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부계혈족의 범위가 현행보다 줄어들게 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상의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보험종목 구분 합리화(개정안 제8조)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현행 시행령')상의 보험종목 구분이 보험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제8조 제1항 각호), 개정안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보험종목을 통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업자) 영업기준 개선(개정안 제40조 제6항)

현행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과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제40조 제6항), 업계의 현실 및 각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들의 판매 상품, 판매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을 배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개정안 제42조5 제1항)

현행 법령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에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제외되어 있었으나(보험업법 제95조의5 제1항, 시행령 제42조의5 제1항 제1호),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려는 경우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개정안 제48조 제1항 제2호 등)

현행 법령은 어떤 행위가 '보험회사 등이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 등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구속성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으나(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개정안은 규제 대상 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속성 보험계약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6)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취득 절차 간소화(개정안 제59조 제14호)

현행 법령에는 '신고만으로 설립·취득이 가능한 자회사의 업종'에 해외 부동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 등이 해외 부동산업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취득하기 위해

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이 해외에서 부동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